

『구미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07년 5월 14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07년 5월 14일

라. 상정일자 : 2007년 5월 25일

제12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행정지원국장 김 인 중

나. 제안이유

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가 2005년 7월 1일부터 도입 시행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,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특별휴가 제도를 일부 조정하고, 민원편의를 위하여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복무 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.

다. 주요내용

- 주 40시간 근무제의 실시 등(안 제13조)
 -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 원칙
 - 직무의 성질 등을 감안하여 1시간의 범위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운영할 수 있음
- 시간외근무 등을 명할 수 있는 요건 완화(안 제15조)
 - 민원편의 등 공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간외 근무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.
- 근무시간 및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는 기관 확대(안 제16조)
 -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의 경우에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.
- 연가일수 조정(안 제18조)
 -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조정(재직기간 6년이상 경우 23일을 21일로 조정)
- 특별휴가의 조정(안 제23조)
 -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를 무급
 - 포상휴가·장기재직휴가 및 퇴직준비휴가를 폐지
 - 경조사와 관련된 특별휴가 대상 및 일수조정
 - 본인 및 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회갑
 - 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,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·외조부모,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의 사망
 - 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탈상 등과 관련된 특별휴가를 인정하되, 휴가일수를 축소 및 제외

라. 참고사항

- 지방공무원법 제59조
- 경상북도 총무과-4263(2005.4.25)호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시행 관련 복부조례 개정지침 이첩 시달
- 경상북도 총무과-7124(2005.7.20)호 「지방공무원 복무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(표준안)이첩 송부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이 수 영

- 본 개정 조례안은
 -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일부 개정령에 의거 행정기관의 「주 40시간 근무제」가 2005. 7. 1부터 도입 시행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
 -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특별휴가제도를 일부 조정 및 자구 수정 등 복무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개정안임
- 주요 개정내용은
 - 지방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를 원칙으로 함
 - 민원편의 등 공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간외 근무 등을 명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였으며
 - 공무원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재직기간 6년이상 경우 연가일수 「23일」을 「21일」로 조정하였음

- 지방공무원의 특별휴가 중
 -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를 무급으로 하고
 - 포상휴가·장기재직휴가 및 퇴직준비휴가를 폐지하며
 - 경조사와 관련된 특별휴가 일수를 본인 및 배우자의 회갑시 「5일」을 「1일」로 조정하고, 배우자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사망시에는 「7일」을 「5일」로 조정하는 등 현행 공무원에 대한 휴가일수를 1~4일 축소 조정 하였음
- 그 외에는 제명 띄어쓰기 표기의 권장 기준에 따라 조례제명을 띄어쓰거나 법령명을 인용하는 경우 낫표(「 」)로 표기를 변경하는 등 이를 기준에 맞게 개정하는 것임

○ 조례안 검토결과 재검토사항 2가지 입니다

- 먼저 안 제23조제1항중 특별휴가와 관련하여 **【별표3】** 경조사별 휴가일수 조정사항입니다
 - 경조사별 휴가일수를 조정할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을 참고하여 다른 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의 원칙이라는 측면에서 어느정도는 표준안 및 타 자치단체와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
 - 이번 개정안중 자녀결혼 등 일부 경조사는 현행휴가 일수보다는 1~4일 축소하였으나 표준안의 휴가 일수보다는 1~2일 휴가일수를 늘려서 조정하였음
-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해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에 의거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표준안에 준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령에 위배되는 것은 아닙니다

- 다만 우리시의 조정안과 행정자치부의 표준안 및 타 자치단체와의 휴가일수를 종합 비교하여 형평성 등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.
- 다음은 20년이상 장기재직자에 대한 특별휴가 사항입니다
 - 안 제23조제7항에는 20년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10일간의 장기재직 특별휴가를 허가토록 되어있습니다.
 -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장기재직 특별휴가를 폐지하여 지금까지 업무사정 등으로 특별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장기근속 직원들에 대해서는 사기저하가 예상되므로 부칙에 장기재직 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조항을 둘 것인지에 대한 여부를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7. 심사결과 : 수정가결